

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해제요망에따른청원

의안 번호	55
----------	----

소개 연월일 : 1999. 10. 11.

소개의원 : 이상은의원

□ 주 문

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제한지역규정(사하구고시제1994-51호)을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등을 위하여 해제를 요망하는 사항

□ 주요골자

- 토지형질변경불가지역고시(사하구고시제1994051호)는 중복된 규제사항으로 행정관청에서 현장확인도 제대로 하지않은채 허가규제를 하고 있으며 본제한규정은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사하구만 시행되고 있으며
- 이규제로 인하여 일부지역에서는 토지형질변경불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무허가건축물이 난립되고 있는 실정임
- 또한 당초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제한규정 목적인 역사적,문화적,향토적가치 보존취지는 고시당시와 비교하여 지금상황은 현저히 달라진 형편임
- 따라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등을 위하여 행위허가제한지역을 일제히 재검토하여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제한규정(사하구고시제1994-51호)을 해제를 요망하는 사항임

□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65,66,67,68조
- 사하구의회청원심사규칙

청원 요지서

▣ 청원건명 :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 해제요망

▣ 청 원 인 : 하단1동 1175, 가락타운 206-1402. 김 영 수

▣ 소개의원 및 소개년월일 : 이상은 의원('99. 10. 11)

▣ 청원요지 :

-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제한지역(사하구고시제1994-51호) 규정은 관계부서에서 현장확인도 충분히 하지않고 또한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사하구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며
- 이 규제로 인하여 일부지역에서는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제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무허가건축물이 난립되고 있는 형편임
- 당초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목적인 환경,문화,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고 역사적,문화적,향토적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존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고시당시와 비교하여 지금의 여건 및 상황은 많이 달라졌음
- 따라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등을 위하여 토지형질변경등 행위 허가제한규정(사하구고시제1994-51호)을 해제를 요망하는 사항임

▣ 소개의원 의견

-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규정은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우리구만 시행되고 있는 규제조항으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등을 위하여 행위허가제한지역을 일제히 재검토하여 토지형질 변경등 행위허가제한규정(사하구고시제1994-51호)을 해제하여 청원인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어져야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됨